

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발 의 : 2007. 1. 12.(탁석주의원 외 4인 발의)
- 회 부 : 2007. 1. 12.(의회운영위원회,의안번호 2007-제1호)
- 상 정 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(법령 제19702호, 2006. 10. 17)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별표2의 현지교통비(1일당) 10,000원 ⇒ 20,000원으로 조정함.(제7조제2항)

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15조제1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황성만)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(법령 제19702호, 10. 17)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내외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
- 「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 국내여비 지급은 별표2의 현지교통비를 10,000원에서 20,000원으로 조정는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, 시행상에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